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90호

2017. 10. 26.

건 명	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(김만중 의원 대표발의)		
제안 및 제출자	김만중 의원 외 3명	제안연월일	2017. 10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0. 17.

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65호 "연산 화악리의 오계"의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「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
#### 나. 오계심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구성인원 ⇒ 10명 내외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위원장 ⇒ 부시장(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)
- 당연직 위원 ⇒ 친절행정국장, 문화예술과장, 논산문화원장, ㈜지산농원 대표이사
- 위촉직 위원 ⇒ ㈜지산농원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
- 위원의 임기 ⇒ 2년(연임할 수 있음)
- 간사 1명 ⇒ 문화재팀장

## 다.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·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
-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심의
- 심사의 방법, 기준,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출입 및 도태에 관한 사항 심의
- 기타 오계의 보호·육성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

#### 라. 위워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#### 마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- 연산오계의 혈통보존과 증식, 홍보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#### 바.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부칙제2조)

- 「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8조제2항에 "제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"란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

## 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65호 "연산 화악리의 오계"의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「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제116조의2, 「문화재보호법」제4조, 제25조, 「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」, 「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제8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